

신청기관 : 해양경찰청

## 일본 해상보안청의 임용, 교육훈련, 인사 관련 제도의 현황

강영기 |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I 들어가며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청과 유사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상보안청의 성격 및 조직구성원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을 시작으로 하여 구성원의 임용제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 인사시스템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의 그것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해양경찰의 위상 제고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시스템적 보완에 참고로 삼을 만한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해상보안청의 법적 성격<sup>1)</sup>과 조직구성원들의 지위 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 JCG)<sup>2)</sup>은 국토교통성의 외국(外局)이며 해상의 안전 및 치안의 확보를 임무로 하는 경찰기관으로서 1948년 미국해안경비대를 모델로 하여 창설하였다고 한다. 해상보안청장관은 해상보안청법(海上保安庁法)에 따라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청령(庁令)의 형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유일하게 인정된 조직이 해상보안청이다. 해상에서의 범칙의 단속, 해난구조, 해상교통정리, 해도제작 등 해양정보파악 및 항로표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상보안청은 법률(해상보안청법 제25조<sup>3)</sup>)에서 군대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심볼마크·기장·제복 등도 군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순시선 등 선박 자체의 운항체제도 민간 선박과 거의 같다.

해상보안청법 제1조의 규정에는 해상이라고만 하고 있고 지리적인 한계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주된 활동영역은 일본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미일 SAR협정<sup>4)</sup>에 따른 수색구조구역이다. 수색구조임무 수행 시에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항공기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관구

1 해상보안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https://ja.m.wikipedia.org/wiki/%E6%B5%B7%E4%B8%8A%E4%BF%9D%E5%AE%89%E5%BA%81>

2 해상보안청 홈페이지 <https://www.kaiho.mlit.go.jp/>

3 해상보안청법 제25조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해상보안청 또는 그 직원이 군대로서 조직되어 훈련되거나 또는 군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를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4 미일 SAR협정(Agreement on Search and Rescue Regions)은 '1979년의 해상에서의 수색 및 원조에 관한 국제조약(SAR조약)'의 권고에 따라 1986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되었다.

(各管区)의 해상보안본부<sup>5)</sup>가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에 재해파견을 요청한다. 재해파견의 요청을 받은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초계기, 구조비행대(救難飛行隊) 등을 출동시켜 해상보안청의 활동에 협력을 하고, 항공자위대의 경우는 주로 항공구조단(航空救難団)의 구조대가 1958년부터 수많은 수색구조 등의 활동에서 해상보안청에 협력하고 있다. 처음에는 활동범위가 “항(港), 만(灣), 해협(海峽) 기타 일본 연안수역에서”로 한정(제정당시의 해상보안청법 제1조 제1항)되어 있었으나 이후 개정되어 “해상(海上)에서”로 규정하여 한정하지 않게 되면서 활동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륙부분에서 대규모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자치단체나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구조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해군과 연안경비대는 공통부분과 유사점이 많고 다른 나라의 연안경비대에 준한 제복을 채택한 일본의 해상보안청도 실제로는 해상자위대를 포함한 각국 해군의 군복에 유사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국경경비대나 연안경비대는 준(準)군사조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해상보안청이 준군사조직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해상의 준군사조직은 국제법(유엔해양법협약<sup>6)</sup>)의 관점에서 보면 군함이 정의되고 승조원의 계급과 명부도 필요한데, 해상보안청 해상보안관의 계급은 선박에 승선하는 행정직원으로서의 선장·항해사·기관장·통신사·갑판원·주계원(主計員) 등의 직책 및 직무의 범위를 나타내는 선원제도에 가깝다는 점에서도 해상보안청이 준군사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주류로 보인다.

여하튼 발족이후 70여년이 지난 해상보안청이 중앙부처(中央省庁)들 중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청(庁)의 명칭을 둘러싸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해상보안청이 조직적으로는 국토교통성의 외국<sup>7)</sup>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상보안청의 수장인 장관은 국토교통성의 엘리트관료가 취임하는 자리였다고 한다.<sup>8)</sup> 1948년 5월 발족 당시의 해상보안청은 운수성(運輸省)에 설치되었으므로 건설성(建設省)과 운수성이 통합된 국토교통성에서도 구 운수성(日運輸省) 출신의 엘리트가 취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래 국가공무원시험의 상급갑종이나 1종에 합격하여 간부후보생으로서 중앙부처에 채용된 국가공무원에는 동경대학 법학부출신이 많았는데, 해상보안청의 이러한 엘리트들을 양복그룹(背広組)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엘리트들은 현장경험이 적다. 순시선과 항공기 등에 탑승하여 해상보안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해상보안대학교(Japan Coast Guard Academy)와 해상보안학교(Japan Coast Guard School)를 졸업한 해상보안관들이며, 내부적으로 제복그룹(制服組)이라 불린다. 즉, 현장을 담당하는 제복그룹을 양복그룹이 지배하는 것이 해상보안청의 현실이고 수장인 장관에 국토교통성출신자가 취임하는 등 주요 직책을 양복그룹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엘리트그룹이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기 쉽다는 비판을 받는다. 본래 국토교통성의 주된 역할은 국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있기 때문에 영해경비와 재난구조를 관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교통성의 외국에 불과하여 해상보안청의 예산규모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상보안관들이 내용연수를 지난 선박을 수리하면서 긴장의 끈

5 해상보안본부는 각 관구별로 하나씩 총 11개가 있으며, 각관구의 담당구역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해당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구역과 연안수역 및 근해수역이 된다.

6 국제연합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1982년 채택된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전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규정한 포괄적인 해양헌장으로서 우여곡절 끝에 1994년 UN총회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서명하면서 1994년 11월 16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7 부나 성(府省) 아래에 설치하는 특수임무 담당기관을 외국(外局)이라고 한다.

8 이하의 내용은 前屋 毅, “国交省からの離脱、海保の本音” 2013. 7.22.  
<https://news.yahoo.co.jp/byline/maeyatsuyoshi/20130722-00026604/>

을 늦출 수 없는 영해경비나 위험을 동반한 해난구조에 투입되는 현실에 대한 불만도 존재한다. 실제로 1997년의 정부조직개편(省庁再編) 당시 해상보안청을 국토교통성에서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국가공안위원회가 자신의 관할로 편입하려고 하자 분리시도를 단념하였다고 한다. 앞으로도 분리시도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양복그룹과 제복그룹의 균열로 인하여 영해경비와 해난구조 등 현장에서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해상보안청의 조직구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표적인 법규가 해상보안청법<sup>9)</sup>과 해상보안청조직규칙(2001년 국토교통성령 제4호)<sup>10)</sup>인데, 해상보안청조직규칙은 국가행정조직법(1948년 법률 제120호) 제7조 제6항 및 제21조 제5항 그리고 해상보안청법(1948년 법률 제28호)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제13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동법과 국토교통성조직령(2000년 정령 제255호) 및 해상보안청법 시행령(1948년 정령 제96호)의 실시를 위해 해상보안청조직규정(1952년 운수성령 제74호)의 전부를 개정하는 명령으로서 제정된 것이다.

해상보안청은 해상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률위반을 예방하고 수사하며 진압하기 위해 국가행정조직법(1948년 법률 제120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국토교통대신이 관리하는 외국(外局)으로서 설치된 것이며(해상보안청법 제1조 제1항), 해상보안관은 해상의 범죄단속, 해난구조, 해양오염의 방지, 국토교통의 안전 확보 등을 주된 임무로 한다. 이들은 해상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경찰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무장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리고 해적에 대해서는 일본 영해뿐만 아니라 공해상에서도 추적하여 용의자를 체포하고 관련자산을 압수할 수 있다. 해상보안관의 급여는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는 '공안직봉급표(2)'가 적용되는데, 본청이나 관구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경비구난부(警備救難部) 이외에 소속된 경우에는 '행정직봉급표(1)'이 적용되기도 한다(인사원규칙 9-2). 직무에 필요한 각종 자격의 취득은 해상보안청내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지만, 선박관계(해기사 등), 무선관계(종합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등), 항공기관계(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 등)의 유자격자 채용이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해상보안청 직원의 대다수는 해상보안학교나 해상보안대학교의 졸업자이지만 최고위의 해상보안청장관은 제43대 장관에 해상보안청직원이 취임하기까지 계속해서 상급관청(운수성, 국토교통성)의 국장급 엘리트관료가 취임하였다. 그리고 관구본부장과 본청의 기간직원에는 국토교통성이나 부처간(省庁間)교류에 따른 타 부처의 관료가 해상보안청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상보안청이 채용한 1종 및 3종(이학(理學)계, 기술계)의 직원이 해상보안관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해상보안청법 시행령<sup>11)</sup> 제9조에는 일등해상보안감(一等海上保安監)을 최고위로 하고 삼등해상보안사보(三等海上保安士補)까지 12계급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해상보안관보(海上保安官補)는 아무도 없고 해상보안관보의 계급인 일등해상보안사보(一等海上保安士補)부터 삼등해상보안사보까지의 임명 없었다고 한다.

9 해상보안청법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AC0000000028](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AC0000000028)

10 해상보안청조직규칙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3M60000800004](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3M60000800004)

11 해상보안청법 시행령(1948년 정령 96호)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C00000000096](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C00000000096)

이하에서는 해상보안청 직원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해상보안관을 중심으로 하여 해상보안청의 임용제도, 훈련 제도, 인사제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 II 일본 해상보안청의 임용(채용)제도와 관련하여

해상보안청은 해상에서의 치안의 확보, 영해경비, 해난구조, 해양환경의 보전,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해양조사, 선박교통안전의 확보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주역이 해상보안관이다. 해상보안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는 ①바다를 좋아하고 ②체력이 충분하며 ③정의감이 강할 것 등이라고 한다. 즉, 해상보안관이 육상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상에서 근무하므로 바다를 좋아할 필요가 있고, 해상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심신 모두 힘들기 때문에 충분한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되며, 수상한 선박의 확보 등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정의감이 강한 자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상보안관이 되기 위해서는 ①해상보안대학교 학생채용시험 또는 해상보안학교 학생채용시험<sup>12)</sup>, ②해기사면허 등의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해상보안관 채용시험, ③국가공무원채용 종합직채용시험<sup>13)</sup> 또는 일반직채용시험(대졸수준의 시험) 중의 하나에 응시하여야만 한다. 원칙적으로는 해상보안관이 되려면 해상보안대학교(海上保安大学校)나 해상보안학교(海上保安学校)에 입학하여 해상보안관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야 하는데, 해상보안대학교 및 해상보안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은 학생이면서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은 무료이며,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월급과 보너스가 지급되기에 학생채용이라고 부른다.

해상보안대학교(4.5년)는 간부직원의 양성, 해상보안학교(1~2년)는 일반직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양자 모두 해상보안청의 교육기관이지만 학교에서의 교육기간과 향후 진로는 다르다.<sup>14)</sup> 해상보안대학교는 해상보안청의 간부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배우는 곳으로서 히로시마현(広島県) 구레시(呉市)에 있고 교육기간은 본과(4년), 전공과(6개월), 연수와 국제업무과정(6개월)으로 되어 있는데, 졸업 후에는 순시선에서의 근무가 기본이며 이후 본청 등에서의 육상근무와 해상근무를 순차적으로 경험한 다음에 간부로서 근무하게 된다. 한편, 해상보안학교는 해상보안청의 일반직원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곳으로 교토부 마이즈루시(京都府舞鶴市)에 있고, 선박운항시스템과정(항해코스, 기관코스, 주계(主計)코스:1년), 항공과정(1년), 정보시스템과정(2년), 해양과학과정(1년)의 4개 과정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험 시에 이 중에서 선택을 한다. 실습과정 수업이 많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실무경험을 쌓은 뒤에 해상보안대학교의 특수과에 진학하면 장래에는 간부로서 활약할 수도 있다.

해상보안대학교와 해상보안학교는 저마다 수험자격<sup>15)</sup>이 다른데, 각각의 연령제한이 다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즉, 해상보안대학교는 입학하는 해의 4월 1일 현재 21세 미만의 자일 것이 요구되고, 해상보안학교는 입학하는 해의 4월 1일 현재 24세 미만의 자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교졸업 후 대학까지 졸업한 후에는 해상보안

12 해상보안대학교 등 학생채용시험 <https://www.kaiho.mlit.go.jp/ope/saiyou/bosyu.html>

13 해상보안청 종합직 직원채용정보 <https://www1.kaiho.mlit.go.jp/saiyou/index.html>

14 이하내용은 해상보안관 업무정보사이트 <http://careergarden.jp/kaiyouhoankan/naruniha/> 참조

15 수험자격 등 상세한 내용은 <https://www.kaiho.mlit.go.jp/ope/siken.html> 참조

학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상세한 수험자격에 대해서는 매년 해상보안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므로 일찍 확인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해상보안대학교와 해상보안학교의 양쪽 모두에 응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5급 해기사(海技士) 등 해기면허(海技免許)와 관련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유자격자 채용시험도 있기는 하지만 매우 적은 수만 채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상보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해상보안청에서는 선박, 항공기, 무선통신 등의 자격이 있는 자(有資格者)를 해상보안관으로 채용하고 있다.<sup>16)</sup> 해상보안청의 자료를 보면 2010년 말 현재의 해상보안청 정원은 12,636명인데, 그 중 여성직원은 502명이고 2010년도 시험의 여성합격자 비율은 21.9%이며 여성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전체 직원 중에서 관구해상보안본부(管区海上保安本部) 등의 지방부서에서는 11,061명, 순시선 및 항공기 등에는 5,961명의 해상보안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2016년도 말에는 해상보안청 정원이 13,626명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관구해상보안본부 등의 지방부서에 11,827명이, 순시선 및 항공기 등에 6,948명이 있었다.<sup>17)</sup>

현재 국토교통성 정원규칙(国土交通省定員規則)<sup>18)</sup>에 따른 해상보안청의 정원은 13,99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해상보안청 직원은 직무의 성질상 단결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가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2 제5항). 국토교통성 정원규칙은 내각이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1969년 법률 제33호)<sup>19)</sup> 제2조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한 행정기관직원정원령(行政機關職員定員令, 1969년 정령 제121호)<sup>20)</sup>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다.

해상보안관은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전원 계급으로 분류된다.<sup>21)</sup> 예컨대, 해상보안대학교를 졸업하면 3등해상보안정(三等海上保安正)이라는 계급부터 시작하고 주임항해사(主任航海士), 주임기관사(主任機關士), 주임통신사(主任通信士) 등의 직명으로 각자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해상보안학교 졸업 후의 계급은 3등해상보안사(三等海上保安士)이고 항해사보(航海士補), 기관사보(機關士補), 주계사보(主計士補) 등의 직명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해상보안대학교와 해상보안학교 중에서 어디를 졸업하였는지에 따라서 출발시점의 계급이 다르다. 계급이 오르는 것을 승임(昇任)이라고 하며 승진임용에 따라 급여도 오른다. 가장 상위에 '장관'이 있고 다음으로 '차장', '경비구난감(警備救難監)', '일등해상보안감' 등으로 직책(직급)이 이어진다. 계급은 경찰관 등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법률적·조직적 효력을 가지며 각각의 계급에 따라 책무가 상세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6 유자격자 채용은 <https://www.kaiho.mlit.go.jp/ope/saiyou/mojisaiyou-index.html>

17 해상보안 리포트(海上保安レポート) 2017  
[https://www.kaiho.mlit.go.jp/info/books/report2017/html/ninmu/ninm17\\_01.html](https://www.kaiho.mlit.go.jp/info/books/report2017/html/ninmu/ninm17_01.html)

18 국토교통성정원규칙(2001년 1월 6일 국토교통성령 제28호)(최종개정 2018년 3월 30일 국토교통성령 제92호)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3M60000800028](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3M60000800028)

19 행정기관의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行政機關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1969년 법률 제33호)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44AC0000000033](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44AC0000000033)

20 행정기관직원정원령(行政機關職員定員令, 1969년 정령 제121호)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44C00000000121&openerCode=1](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44C00000000121&openerCode=1)

21 이하의 해상보안관의 계급에 대해서는 <http://careergarden.jp/kaijyouhoankan/kaikyuu/> 참조

계급은 소매기장(袖章), 흉장(胸章), 견장(肩章)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들을 계급장이라고 한다. 예컨대 소매의 금색선의 수가 많을수록, 선이 두터울수록 계급이 높다. 제복모자에 붙어있는 모장(帽章)도 계급마다 다르기도 하고 앞부분에 선이 붙은 경우 등 제복을 보면 즉시 계급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계급들을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의 장(組織長)>

- 해상보안청장관(海上保安庁長官)
- 차장(次長)
- 정비구난감(警備救難監)

<해상보안감(海上保安監)>

- 일등해상보안감(一等海上保安監)(甲·乙)
- 이등해상보안감(二等海上保安監)
- 삼등해상보안감(三等海上保安監)

<해상보안정(海上保安正)>

- 일등해상보안정(一等海上保安正)
- 이등해상보안정(二等海上保安正)
- 삼등해상보안정(三等海上保安正)

<해상보안사(海上保安士)>

- 일등해상보안사(一等海上保安士)
- 이등해상보안사(二等海上保安士)
- 삼등해상보안사(三等海上保安士)

해상보안청의 직원이나 학생의 채용(임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상보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sup>22)</sup>, 이들의 임용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각 임명권자는 직원을 승진 또는 강등시키는 경우에는 임명하고자 하는 관직에 필요한 표준직무수행능력 및 해당 관직에 대한 적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인사평가를 토대로 판단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54조에 따라 직원의 채용, 승진임용 등에 관한 제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으로서 ‘채용승임 등 기본방침(採用昇任等基本方針)’이 마련되어 있고, 각 임명권자는 이 기본방침에 따라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내각관방(内閣官房)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이 기본방침에 기초한 임용상황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정부의 전체적인 임용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sup>23)</sup>

22 직원채용/학생채용 <https://www.kaiho.mlit.go.jp/ope/saiyou/bosyu/index.html>

23 국가공무원의 임용 관련 내용 [https://www.cas.go.jp/jp/gaiyou/jimu/jinjikyoku/jinji\\_b.html](https://www.cas.go.jp/jp/gaiyou/jimu/jinjikyoku/jinji_b.html)

국가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규정에는 내각이 국가공무원법(1947년 법률 제120호)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한 표준관직정령(標準的な官職を定める政令, 2009년 정령 제30호)<sup>24</sup>, 표준직무수행능력(標準職務遂行能力), '채용승임 등 기본방침(採用昇任等基本方針)' 등이 있는데<sup>25</sup>, 표준직무수행능력은 국가공무원법 제34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하여 직무의 종류 및 직제상의 단계에 따라 정하는 계원(係員), 계장(係長), 과장보좌(課長補佐), 과장(課長) 등의 표준적인 관직의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발휘되어야 할 능력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정하는 것이다. '채용승임 등 기본방침'은 국가공무원법 제54조를 근거로 동법에서 주창하는 제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실현하기 위해 각 임명권자가 임용(채용, 승임, 강임, 전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방침(각료회의 결정)으로서 각 임명권자는 본 방침에 따라 임용하는데, 개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간부직원인사 일원관리·관리직에의 임용에 관한 지침(幹部職員人事一元管理・管理職への任用に関する指針)과 여성직원의 채용·등용의 확대 및 지원의 일과 생활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촉진 등에 관한 지침(女性職員の採用・登用の拡大及び職員の仕事と生活の調和を図るための指針)이 포함되었다.

### III 일본 해상보안청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해상보안관으로서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훈련을 거둔다. 즉, 해상보안대학교나 해상보안학교의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되면,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일정한 과정의 기초교육을 받고 훈련을 거둬야 한다. 훈련의 내용은 수영훈련, 잠수훈련, 권총훈련, 작은 범선(Cutter)훈련 등 다양하다. 그리고 여름에는 장거리수영훈련을 하고 겨울에는 육상훈련(유도, 검도, 범선 등)을 한다.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재학 중에 지도를 받고 수영할 수 있게 되는 등 학생인 동안 훈련을 반복하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장에 투입된 이후에도 업무내용에 따라 소방훈련과 잠수훈련, 헬리콥터 훈련 등이 있고, 잠수사와 특수구조대(特殊救難隊) 등 전문가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다. 근래에는 일본 해역에 수상한 해외선박이 나타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서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가 정기적으로 수상한 선박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원전)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원전테러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되는데, 만일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양자가 연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상보안청에서는 거의 매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종합훈련을 견학하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어서 실제의 해난구조와 수상한 선박의 검거 등을 상정한 훈련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견학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sup>26</sup>

24 표준관직정령(標準的な官職を定める政令, 2009년 정령 제30호)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1CO0000000030](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1CO0000000030)

25 표준직무수행능력(標準職務遂行能力), '채용승임 등 기본방침(採用昇任等基本方針)' 등의 구체적 내용은 [https://www.cas.go.jp/jp/gaiyou/jimu/jinjyoku/jinji\\_b.html](https://www.cas.go.jp/jp/gaiyou/jimu/jinjyoku/jinji_b.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해상보안관의 훈련 개요 <http://careergarden.jp/kaijyouhoankan/kunren/>

한편, 해상보안청은 해양에서 발생한 환자(질병, 부상)에 대한 대응체제를 충실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都道府県)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강습(講習)과정을 수료한 해상보안관을 '구급원(救急員)'으로 지명하고 소방구급대원과 같은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019년 4월 1일 창설하였다.<sup>27)</sup> 해상보안청은 구조·구급체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 특수구난대와 기동구난사(機動救難士)에 구급구명사(救急救命士)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고 과거 5년 동안 3,711건의 해난사고에 출동하여 1,265명을 구조하였다. 해양에서 발생한 환자의 구급체제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소방기관의 구급대원과 같은 연수과정을 수료한 특수구난대원(特殊救難隊員)과 기동구난사 등을 '구급원'으로 지명하고 소방기관의 구급대원과 같은 범위 내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적절히 구급구명사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구급원제도(救急員制度)'를 창설한 것이다. 그리고 구급원의 취업 전 연수를 마친 후, 약 70명의 특수구난대, 기동구난사 등이 각 관구(管区)의 해상보안본부장으로부터 '구급원'으로 지명될 것이라고 한다. 동 제도의 창설로 소방법시행규칙(消防法施行規則) 제51조에서 정하는 해상보안관의 조치범위가 응급대원의 조치범위와 같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각종 훈련의 근거규정은 우선 해상보안청법 제5조 제28호<sup>28)</sup>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규정이 있어서 문교연수시설(文教研修施設)인 해상보안대학교와 해상보안학교에서 해상보안관으로서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교연수시설은 국가의 행정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등 기관의 하나로서 주로 관장 사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시설인데, 내각부분부조직령(内閣府本部組織令) 및 각 성조직령(各省組織令)에 시설명, 각 성설치법(各省設置法)에 역할이 각각 명기되어 있다. 국토교통성의 경우에도 관장사무에 관한 양성 및 연수를 실시하는 문교연수시설로서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국토교통대학교, 항공보안대학교, 기상대학교, 해상보안대학교, 해상보안학교 등을 두고 있다.

해상보안대학교는 해상보안청의 간부직원(간부 해상보안관)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고, 해상보안학교는 해상보안청의 직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들의 설치근거는 국토교통성 조직령(国土交通省組織令, 2000년 정령 제255호) 제3관 제254조<sup>29)</sup>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조문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27 해상보안청 홈페이지 홍보란의 “尊い命を救うために！海上保安庁救急員制度創設！”  
<https://www.kaiho.mlit.go.jp/info/kouhou/post-609.html>

28 해상보안청법 제5조 해상보안청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무를 주관할 수 있다. 28호 정령에서 정하는 문교연수시설에서 관장사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

29 국토교통성 조직령(国土交通省組織令)은 내각이 국가행정조직법(1948년 법률 제120조), 국토교통성설치법(1999년 법률 제100호) 및 해상보안청법(1948년 법률 제28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 정령이다.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2CO0000000255#2014](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2CO0000000255#2014)

## 제3관 시설 등 기관

제254조(설치) 해상보안청에 다음의 시설 등 기관을 둔다.

해상보안대학교

해상보안학교

제255조(해상보안대학교) 해상보안대학교는 해상보안청의 직원에 대해서 간부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해상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수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주관한다.

제256조(해상보안학교) 해상보안학교는 해상보안청의 직원에 대해서 해상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능(간부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제외한다)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해상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수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주관한다.

제257조(문교연수시설의 지정) 해상보안대학교 및 해상보안학교는 해상보안청법 제5조 제28호에 규정하는 정령에서 정하는 문교연수시설로 한다.

또한, 해상보안청법 제33조의2 제5조 제28호의 “문교연수시설의 명칭, 위치 및 내부조직은 해상보안청령에서 정한다”는 위임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상보안대학교의 명칭, 위치 및 내부조직에 관한 청령’(1961년 10월 16일 해상보안청령 제2호)<sup>30)</sup> 및 ‘해상보안학교의 명칭, 위치 및 내부조직에 관한 청령’(1961년 10월 16일 해상보안청령 제2호)<sup>31)</sup>에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훈련관리관이 교육훈련을 담당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상보안청조직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sup>32)</sup>

## IV 일본 해상보안청의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인사원(人事院)<sup>33)</sup>의 국가공무원시험(해상보안대학교 및 해상보안학교의 학생채용시험)<sup>34)</sup>에 합격하고 채용이 내정되면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해상보안관으로서 근무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급여를 수령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한편, 능력 및 실적에 따른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인사평가는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휘한 능력 및 업적을 파악하고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가이다.<sup>35)</sup> 인사평가는 임용, 급여, 권한분배 기타 인사관리의 기초가

30 해상보안대학교의 명칭, 위치 및 내부조직에 관한 청령(海上保安大学校の名称、位置及び内部組織に関する庁令, 1961년 해상보안청령 제2호)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36R00000002002](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36R00000002002)

31 해상보안학교의 명칭, 위치 및 내부조직에 관한 청령(海上保安学校の名称、位置及び内部組織に関する庁令, 1961년 해상보안청령 제2호)(2018년 3월 30일 개정, 2018년 해상보안청령 제1호)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6R00000002002](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6R00000002002)

32 해상보안청 조직규칙 제8조(교육훈련관리관의 직무) 교육훈련관리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상보안청 직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것  
 2. 해상보안대학교 및 해상보안학교의 학생채용에 관한 것  
 3. 해상보안대학교 및 해상보안학교에서의 해상보안청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것  
 4. 해상보안청의 소관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무 중에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무의 총괄에 관한 것

33 인사원 <https://www.jinji.go.jp/>

34 시험응시는 인사원의 채용정보 NAVI에서 신청한다. <https://www.jinji.go.jp/saiyo/saiyo.html>

35 이하의 인사평가는 [https://www.cas.go.jp/jp/gaiyou/jimu/jinjikyoku/jinji\\_d.html](https://www.cas.go.jp/jp/gaiyou/jimu/jinjikyoku/jinji_d.html) 참조

되는 수단임과 동시에 인재를 육성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평가의 과정에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 내 의식의 공유화와 업무개선 등에도 기여하는데, 이러한 효과를 통해 활기 넘치는 공무조직의 실현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

행정적 수요가 복잡화·고도화·다양화되고 그러한 변화속도 또한 빨라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담당할 공무원의 양성에도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직원의 입장에서 많은 경험의 축적, 승진, 전문성의 향상 등 근로상의 다양한 요구가 나타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채용시험의 종류와 연차 등을 중시한 채용, 급여처우 등 획일적인 인사관리가 아닌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실적 등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한층 효율적인 공무수행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공무원에게 능력·실적 위주의 인사관리 도입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7년 7월 6일에 공포되어 2009년 4월 1일 시행되었는데(인사평가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여기서 인사평가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휘한 능력 및 거둔 업적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성적의 평가”로 정의되며 “임용, 급여, 권한분배 기타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명확히 자리매김하고 “인사관리는 직원채용시험의 종류나 연차를 불문하고 인사평가에 따라 적절히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제도의 개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이 2008년 6월 13일에 공포, 시행되었는데, 이 기본법에서도 인사평가에 관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업윤리를 확립함과 동시에 능력과 실적에 따른 적절한 인사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사평가는 능력평가(직원이 그 직무수행에서 발휘한 능력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성적의 평가) 및 업적평가(직원이 그 직무수행에서 거둔 업적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성적의 평가)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조건부 임용을 정식임용으로 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평가(능력평가에 따라 실시)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양자 모두 평가기간 중의 직무행동과 업무의 달성상황을 평가기준에 비추어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해상보안청의 인사평가는 인사과에서 담당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해상보안청 조직규칙 제5조(인사과의 소관사무)<sup>36)</sup>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적용할 대표적 규정은 내각이 국가공무원법(1947년 법률 제120호) 제70조의3 제2항 및 부칙 제13조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한 정령인 ‘인사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정령(人事評価の基準、方法等に関する政令)’(2009년 정령 제31호)<sup>37)</sup>이다. 능력평가와 업적평가를 토대로 한 인사평가는 국가공무원법, 인사평가정령, 각부성(各府省)이 정하는 인사평가실시규정에 따라 실시하며(정령 제1조 1항), 인사평가는 실시권자(소관부처의 장 또는 부내의 상급직원)가 실시하는데(정령 제2조), 비상근직원이나 임시임용직원 등 인사평가의 결과를 급여 등에 반영할 여지가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령 제3조). 또한 국가공무원인 직원의 승진임명(昇任) 등은 임명권자가 인사평가를 근거로 표준직무수행능력 및 적성을 갖

36 해상보안청 조직규칙 제5조(인사과의 소관사무) 인사과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상보안청의 직원의 임면, 급여, 징계, 복무 기타 인사에 관한 것(비서과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해상보안청의 정원에 관한 것
3. 표창(表彰)에 관한 것

37 인사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정령(人事評価の基準、方法等に関する政令)(2009년 정령 제31호)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1CO0000000031&openerCode=1](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1CO0000000031&openerCode=1)

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실시하며(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인사평가의 활용측면을 보면 승진임명(昇任), 강등(降任), 전임(轉任), 면직(免職) 등에 관하여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임면, 급여 등에 대한 활용조치(임면, 급여 등에 대한 활용조치)가 강구된다(인사원규칙)고 볼 수 있다.

## V 맺으며

이상과 같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성격 및 조직구성원의 지위와 관련된 내용을 시작으로 하여 구성원의 임용관련제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 인사평가제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임용제도에서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등과 같이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한 일반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다만, 해상보안대학교 등의 문교연수시설을 중심으로 해상보안관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었고 해상보안청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었다. 인사평가제도 관련 내용도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의 관련 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해양경찰의 위상 제고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시스템적 보완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해상보안청 홈페이지 <https://www.kaiho.mlit.go.jp/>

해상보안 리포트(海上保安レポート) 2017

[https://www.kaiho.mlit.go.jp/info/books/report2017/html/ninmu/ninm17\\_01.html](https://www.kaiho.mlit.go.jp/info/books/report2017/html/ninmu/ninm17_01.html)

해상보안청법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AC0000000028](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AC0000000028)

해상보안청법 시행령(1948년 정령 96호)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CO0000000096](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CO0000000096)

해상보안청조직규칙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3M60000800004](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3M60000800004)

행정기관의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行政機関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1969년 법률 제33호)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44AC0000000033](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44AC0000000033)

행정기관직원정원령(行政機関職員定員令, 1969년 정령 제121호)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44CO0000000121](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44CO0000000121)

&openerCode=1

인사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정령(人事評価の基準、方法等に関する政令)(2009년 정령 제31호)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1CO0000000031](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1CO0000000031)

&openerCode=1